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종무, 송명화 의원 (찬성자 18명)
- 의안번호 : 제1369호
- 발의일자 : 2020년 3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12일

2. 제 안 이 유

-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 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나. 하천 관리기관은 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시행령, 「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 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,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서 시민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만들도록 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법령의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는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- 동 조례에는 서울시 생태·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, 야생생물의 보호,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, 자연자산의 관리,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구 분	해 당
1장 총칙	제 1조~제 6조
2장 생태·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	제 7조~제14조
3장 야생생물의 보호	제15조~제25조
4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	제26조~제30조
5장 자연자산의 관리	제31조~제34조 (제32조 자연형 하천정비)
6장 시민참여	제35조~제38조
7장 보칙	제39조

- 하천 관련된 법령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「하천법」이 있으며,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은 「소하천정비법」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.
- 하천정비에 관한 내용 중 「하천법」 제43조에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, 서울시에는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32조에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 하천정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친환경적 하천정비 관련 사항을 동 조례에서 다루고 있음(자료 1).

2)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

가)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의견 (안 제4조 관련)

- 동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,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, 기술 교류에 앞장서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.
(자료 2 참고)
-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, 금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‘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’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임.
- 시장이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 참여만 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.
- 그러나 시민참여를 독려할 경우 자연환경 보전에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, 기존 시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는 유지하되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나) 하천정비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 (안 제32조 관련)

- 국가하천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를 관통하는 광역의 권역을 가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나,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활권을 같이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이 보다 필요함.
- 최근 강동구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지역 자연형하천(고덕천)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,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.
- 자연형하천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- 그러나 ‘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정비계획’에 관한 사항은 「하천법」에 근거한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는 통합적 계획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푸른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‘자연형 하천정비’에 한정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따라서 시민 등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‘하천 정비계획’ 업무가 아닌 ‘자연형 하천 정비 계획’에 관한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임.

〈자료 1〉

- 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 또는 「소하천정비법」에 따른 소하천(이하 "하천"이라 한다)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, 야생동·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
- ② 하천의 관리기관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〈자료 2〉

원 안

- 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 등을 교류·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개정 안

- 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 등을 교류·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